

일시도로점용허가에 따른

안 내 문

귀하(사)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.

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(사)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,

‘살기좋은 안전도시’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번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허가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협 조 사 항 =

○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 허가받은 기간, 면적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, 허가사항 외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재허가를 받으시고 공사(작업) 시행
(※ 허가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찰 점검하고 있으며, 허가사항 초과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
○ 도로(차도 및 인도) 위에 공사자재(시멘트, 자갈, 모래 등) 관리 미흡으로 주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리 정돈 등 공사장 관리 철저

○ 공사(작업)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장(작업장) 주변 청소 실시

끝으로 우리 구에서 하시는 각종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며, 견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용 산 구